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❍ 「상법」이 일부 개정(법률 제17362호, 시행 2020. 9. 10.)되어 회사 설립 전 상호의 가등기를 주식회사,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회사 설립 전 상호가등기의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(안 제80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)

4.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　　호　　2020. . . 공포

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2항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“주식회사”를 각각 “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”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(상호의 가등기 등) ① (생략)	제80조(상호의 가등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「인감증명법」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.	②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 ----------.
③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	③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④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.	④ 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 -----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 - 1878